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6.

발 의 자 : 서영석·윤준병·강준현
노종면·김승원·한정애
이성윤·윤종균·박선원
김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·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,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).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받아”를 “받거나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2장제4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기수급자 및 수급탈락자에 대한 급여자격 확인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확인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그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
 2.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자
-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확인대상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

이 있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중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확인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범위, 확인 주기 및 방법, 안내 절차, 조사 생략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자격 확인에 관한 특례)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자격 확인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의2(맞춤형 급여 안내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<u>받아</u> 주기적으로 사회 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 하여 그 결과를 안내(이하 “맞 춤형 급여 안내”라 한다)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22조의2(맞춤형 급여 안내) ① ----- ----- -----<u>받거나</u> 제22조의3제1 <u>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자에 대하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2조의3(기수급자 및 수급탈락</u> <u>자에 대한 급여자격 확인 등)</u> <u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</u> <u>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(이</u> <u>하 이 조에서 “확인대상자”라</u> <u>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</u> <u>격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</u> <u>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</u> <u>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</u> <u>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그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사</u></p>

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
수급자

2.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
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
중지된 자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
따른 확인 결과 확인대상자가
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
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
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
인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
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
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
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조
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
본다.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
에 따른 조사 중 이미 확인된
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
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른 수급자격 확인 대상 사회보
장급여의 범위, 확인 주기 및
방법, 안내 절차, 조사 생략의
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